

2026년 하반기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 공고(3차)

미세먼지·온실가스 저감 및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전기자동차를 보급하고자 「2026년 하반기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을 다음과 같이 시행 공고합니다.

2026. 8. 4.

정 읍 시 장

I 사업 개요

- 사업기간 : 2026. 8. 18.(화) ~ 12. 4.(금) ※ 예산 소진 시 접수 마감
 - 승용, 화물 접수기간 : 2026. 8. 18.(화) 09:00 ~ 8. 21.(금) 18:00
 - 승합 접수기간 : 2026. 9. 1.(화) ~ 9. 4.(금)
 - 지원가능확인 요청 : 승용 2026. 8. 25.(화) 14:00 / 화물 2026. 8. 27.(목) 14:00
승합 2026. 9. 7.(월) 14:00

- 보급대수 : 270대(승용 200대, 화물 67대, 승합 3대) ※ 상반기 미선정자 시스템 재접수
(단위 : 대)

구분	계	전기 승용 (일반)	전기 화물 (일반)	전기 승합 (일반)
2026년	269	200	67	3

- ※ 하반기부터 일반물량 통합 진행, 승합 어린이통학용 물량 없음
- ※ 보급 대수 및 접수 시기는 여건 및 예산 범위 내에서 변동될 수 있음

- 선정방법 : 지원가능확인 요청순 및 차량 출고·등록순
 - ※ 불법 매크로 프로그램을 통한 이중 접속 확인 시 후순위 배정 또는 대상자 선정 취소될 수 있음을 유의
- 지원대수 : 승용·화물 1대(개인·개인사업자, 법인 등)
승합 1대(개인) ※ 소형 승합 1대만 구매하는 개인사업자, 법인 지원가능
 - ※ 법인·개인사업자가 승용 또는 화물 차량 2대 이상 보조금 지원신청 시 한국환경공단 문의(☎1661-0970)

- 신청방법 ※ 공고구분은 반드시 '추경2' 로 신청
 - ① (구매 희망자) 전기자동차 제작·수입사와 상담 후, 구매계약서 및 구매신청서 작성
 - ② (제작·수입사) 신청서류를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 등록하여 신청

II

보급 대상 및 보조금

○ 보급 차종 및 지원액

- ① 보조금 대상 차종 및 지원액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ev.or.kr) 및 [별표1] 참고
- ② 구매지원 보조금

(단위 : 만원)

대 상 차 종		계	국비	도비·시비	비 고
전기 승용	중·대형	최대 1,210	최대 580	최대 630	- 차종별 차등 지원
	소형·경형	최대 1,030	최대 530	최대 500	- 차종별 차등 지원
	초소형	360	200	160	- 정액 지원
전기 화물	소형	최대 1,750	최대 1,050	최대 700	- 차종별 차등 지원
	경형	최대 1,270	최대 770	최대 500	- 차종별 차등 지원
	초소형	630	380	250	- 정액 지원
전기 승합	대형	최대 14,000	최대 7,000	최대 7,000	- 차종별 차등 지원
	중형	최대 10,000	최대 5,000	최대 5,000	- 차종별 차등 지원
	소형	최대 3,000	최대 1,500	최대 1,500	- 차종별 차등 지원

※ 향후 추가되는 차량은 별도 공고 개정 없이 무공해차 통합누리집(<http://www.ev.or.kr>)에 게재

○ 전기승합차 구매 유의사항

- ① 대형 전기승합차 구매자는 해당 차량 구매를 위해 최소 1억원 이상 자부담해야 하며, 최소 자부담금과 전체 보조금(구매보조금, 저장보조금 등)의 합이 해당 차량가격을 초과할 수 없음
- ② 최소 자부담금과 전체 보조금의 합이 구매 시 차량가격을 초과하거나 전체 보조금의 합이 해당 차량가격의 70%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 초과분을 구매보조금에서 차감

○ 보조금 추가 지원

① 전기승용차

- 전기 택시는 해당 차량 보조금 지원단가에서 국비 250만원 추가 지원
 - ▶ 구매자가 택시사업자면허를 가진 경우 지원 가능 (증빙자료로 면허증 사본 제출), 택시법인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이 구매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추가 지원
- 차상위 이하 계층 구매 시 국비 지원액의 20% 추가 지원
- 청년(「청년기본법」 제3조에 따라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이 생애 첫 자동차로 전기승용차를 구매하는 경우 국비 지원액의 20%

- 다자녀가구(18세 이하 자녀 2명 이상)에 해당하는 개인이 구매 시 자녀 수에 따라 최대 300만원 및 도비 50만원 추가 지원*
 - ▶ (2자녀) 150만원, (3자녀) 250만원, (4자녀 이상) 350만원
- * 담당자가 도비 50만원 시스템 별도 입력함. 시스템 신청내역 상 보조금신청액과 상이해도 신청서에 50만원 포함하여 작성
- 도심 내 영업용(배달·관광 등), 단거리 교통수단으로 활용 등의 목적으로 구매시 국비 50만원 추가 지원(초소형)
 - ▶ [붙임4] 초소형 전기자동차 지역거점사업 참여확인(신청)서, 사업계획서, 차량제조사 확인서 제출
- 리스/렌탈 사업목적으로 구매(증빙서류 제출 필요)하는 경우, 국비 180만원 이내 추가 지원
 - ▶ 차종별 일반 국비 보조금 산정 수준에 비례하여 차등 산정
 - ▶ 이용자명의 리스 등과 같이 차량등록증 상 명의가 개인(구매자)인 경우 개인구매 기준 적용 (단, 계약서 등을 통해 보조금 회수의무 이행주체를 명확히 지정하고,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기존 노후 전기차(BMS 안전기능* 업데이트가 불가능한 차량에 한함)를 폐차하고 전기차를 재구매하는 경우 국비 20만원 추가지원
 - * 배터리 이상을 주차 중에도 감지(상시 또는 간헐)하고 차주 및 제작사에 알리는 기능
- 교통약자 이동을 지원하기 위해 휠체어 탑승설비 등을 장착한 차량 (「교통약자법」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설비요건 충족)에 해당하는 경우 200만원 추가 지원
 - ※ 단, 「교통약자법」에 따라 국토교통부 또는 지자체에서 비용지원을 받은 경우 추가지원 미 실시

② 전기화물차

- 소상공인, 차상위 이하 계층이 구매 시에는 국비 지원액의 30% 추가 지원
- 농업인이 구매 시 해당차량 국비 지원액의 10% 추가 지원
 -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 및 「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에 따른 농업인 확인서 또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또는 증명서) 제출
- 택배용 차량으로 전기화물차 구매 시, 국비 지원액의 10% 추가 지원
 - ▶ 「화물자동차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운송사업 중 화물을 집하·분류·배송하는 형태의 운송 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 ※ 보조금 지급 전까지 (예비)화물운송사업허가증 첨부해야 지급 가능
- 도심 내 영업용(배달·관광 등), 단거리 교통수단으로 활용 등의 목적으로 구매 시 국비 50만원 추가 지원(초소형)
 - ▶ [붙임4] 초소형 전기자동차 지역거점사업 참여확인(신청)서, 사업계획서, 차량제조사 확인서 제출
- 경유화물차를 보유한 전기화물차 구매자 중 폐차(수출·말소 포함) 미이행자는 성능보조금 국비 50만원 및 지방비 일부 차감
 - ※ 판매하는 경우는 지원신청 전 완료된 건에 한하여 미차감, 지원신청이후 인정 불가
 - ▶ 경유화물차 미보유자는 상기 규정에 대해 해당사항 없음. 경유화물차 보유여부 반드시 체크

③ **전환지원금** ※전기승용(중대형, 소형), 전기화물(소형, 경형)

- 최초 등록 후 3년 이상 경과한 내연기관차(하이브리드차 제외)를 교체(판매 또는 폐차)한 **개인**이 전기차를 구매하는 경우 전환지원금 최대 130만 원 이내 추가지원
(단, 해당 차량을 보유한 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함) **※ 개인사업자, 법인 지급 불가**
 - ▶ 전기차 차종별 보조금 국비 보조금 산정 수준에 비례하여 차등 산정
 - ▶ **2026. 1. 1. 이후 판매 또는 폐차, 수출말소 건부터 인정**
 - ▶ 구매 지원신청서 접수 시 체크란에 표시 **※ 별도 신청 불가**
(차량 출고·등록 후 지급 신청 시까지 전환지원금 관련 증빙서류 제출)
 - ▶ 내연기관 승용 또는 화물차의 판매 및 폐차 여부, 해당 차량 보유기간 등은 자동차 등록원부(갑부), 자동차 말소 사실 증명서 등 서류를 통해 확인
 - ▶ 단, 가족(가족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되는 배우자, 직계 존비속 등)간 차량 증여·판매에 대해서는 전환지원금을 지원하지 않음. 이를 위반시 전환지원금이 환수조치되며, 확인을 위해 관련 서류 제출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요구할 수 있음

III **보조금 신청 대상**

○ 신청대상

※ 위장전입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보조금 전액환수 및 형사고발될 수 있음.

- ① 신청일 기준 연속으로 3개월(90일) 이상 정읍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18세 이상 정읍시민
 - 개인 : 주민등록초본으로 거주지 이전 사항 확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비자(F-4, F-5) 취득자
 - 공동명의로 구매 시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인 가족에 한하여 가능, 장애의 사유로 미성년자가 공동명의로 신청하는 경우 만18세이상 연령제한 미적용
- ② 신청일 기준 연속으로 3개월(90일) 이상 정읍시 내 사업장이 위치한 법인·기관
 - 법인·기관 : 사업자등록증 또는 등기부등본을 통한 사업장 소재지 확인

○ 우선순위 지원 대상

- 취약계층(장애인, 차상위 이하 계층)
- 상이·독립 유공자, 소상공인, 다자녀 가구, 생애최초 차량구매자, 기존 노후경유차 폐차 후 전기차 대체하려는 자

○ 신청대상 유의사항

- ① 개인사업자일 경우 개인사업자 대표가 정읍시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함
 - 택시 등 개인영업용 차량의 경우 사용본거지를 기준으로 함
- ② 개인사업자의 경우 개인과 개인사업자를 구분하여 신청할 수 없음
- ③ 법인의 경우 법인과 법인대표자를 구분하여 신청할 수 있음
- ④ 차량등록 시 사용본거지를 정읍시로 등록하여야 함.
- ⑤ 일반물량, 우선순위 물량 중복지원 불가

〈 보조금 미지원 대상 〉

- 전기자동차 제작·수입사가 자사 차량을 구매하는 경우
(단, K-EV100 참여 제작·수입사, 리스·렌트용 구매자는 제외)
- 국세 및 지방세, 지방세외수입, 환경개선부담금 등 체납이 있는 경우
- 보조금 지원 확정 이전 차량을 출고한 경우(차량등록증 최초등록일 확인)
- ‘재지원 제한 기간’ 내 2대 이상의 동일 차종 차량을 구매하는 경우
 - 예시 : 승용차 간, 화물차 간 등 동일 차종 구매 시 최초차량에만 지원가능
 - **개인 : (승용차·승합차·화물차) 2년**
 - ‘26년 전기자동차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시행 전 구매지원 건에 대해서도 소급적용
- ✓ 단, 교통사고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보조금 지원받아 구매한 전기차를 폐차한 경우는 재지원 제한기간이 경과하지 않았더라도 보조금 지원 가능(환수금이 있을 경우 납부를 완료한 경우에 한정한다.)

〈 재지원 제한 기간 미적용 대상 〉

- 택시 법인 및 공공기관
- **초소형(승용, 화물)구매자와 법인이 화물(경형), 승합 전기차를 구매하는 경우**
- 기존 노후 경유차를 조기폐차하고 전기화물차를 구매하는 경우 폐차 1건당 1회 재지원 제한 기간 미적용
- 법인이 환경부 민간보조사업(한국환경공단 신청)을 통해 지원 신청하는 경우(국비만 지원)
(재지원 제한 기간 내 승용·화물(소형)을 2대 이상 구입할 경우, 한국환경공단으로 신청)

IV 구매 지원신청

1) 신청방법

○ 사업기간 : 2026. 8. 18.(화) ~ 12. 4.(금) ※ **예산 소진 시 접수 마감**

- **승용, 화물** 접수기간 : 2026. 8. 18.(화) 09:00 ~ 8. 21.(금) 18:00
- **승합** 접수기간 : 2026. 9. 1.(화) ~ 9. 4.(금)
- 지원가능확인 요청 : **승용 2026. 8. 25.(화) 14:00 / 화물 2026. 8. 27.(목) 14:00**
승합 2026. 9. 7.(월) 14:00

※ 지원신청 후 보완 지연으로 인해 지원가능확인 요청이 늦어져도 정읍시는 책임지지 않음.
신청 시 서류 누락, 신청 정보 불일치 사항 등 반드시 확인, 시스템 처리 상황 수시 확인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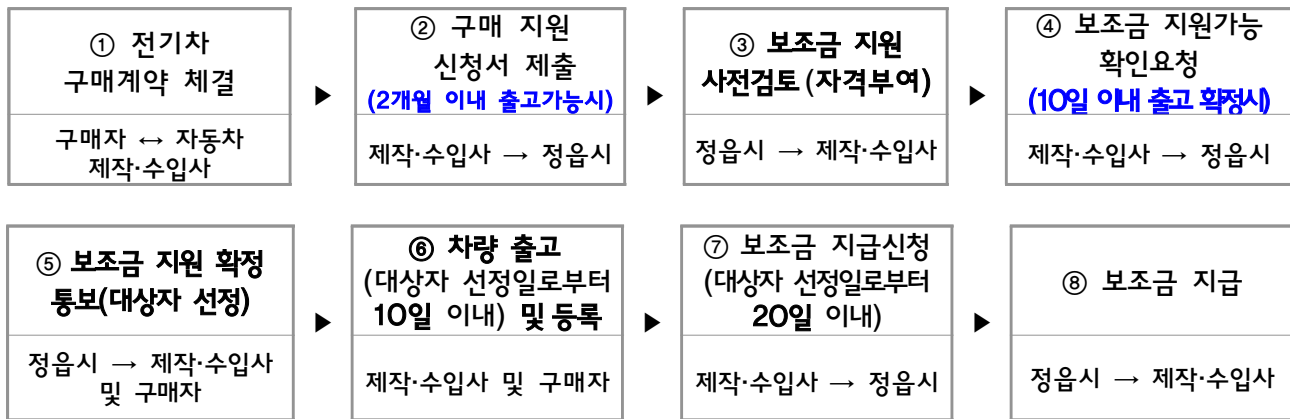
○ 신청장소 : 전기자동차 제작·판매 영업점

- ① (구매희망자) 전기자동차 제작·수입사를 방문하여 상담 후, 구매 계약서 및 구매신청서 작성
- ② (제작·수입사) 2개월 이내 출고 가능한 차량에 한하여, 신청서를 포함한 제출 서류를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으로 신청

※ **이때 전기차 제작·수입사는 관련서류를 반드시 하나의 파일로 통합하여 첨부.**

2) 신청절차

○ 온라인 신청 : 무공해차 통합누리집(<https://www.ev.or.kr>)에서 진행



○ 보조금 지원 가능 사전 검토(자격 부여)

- 구매신청서 등 제출 서류 확인 후, 결격사유가 없으면 7일 이내에 구매신청자 또는 자동차 제작·수입사에 **보조금 지원 가능(자격 부여)** 여부 통보
 - ※ 자격 부여는 보조금 지원 가능 사전 검토 절차이며, 보조금 지원 확정(대상자 선정) 통보를 받은 신청자에게만 보조금 지원
- 국세 및 지방세, 세외수입,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이 있는 경우, **자격 부여 제외**
- 보조금 지원 가능(자격부여) 여부 통보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차량이 출고** (차량 대금 납부 및 세금계산서 발급·제출)되지 않을 경우, 취소되거나 대기자로 변경될 수 있음
 - ※ '**자격부여**'대상자는 선정된 상태가 아니므로, '**자격부여**'상태에서 차량 출고·등록 시 보조금 지급 불가

○ 보조금 지원 확정(대상자 선정) : **지원가능확인 요청** 및 차량 출고·등록순 선정

- 자동차 제작·수입사에서는 자동차 출고가 **10일 이내로 확정 시**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 "**보조금 지원 가능 확인 요청**"
- 정읍시는 예산 범위 내에서 "**보조금 지원가능확인 요청**" 순으로 **보조금 지원 확정(대상자 선정) 통보**(구매 지원신청서 접수순서와 상관없음)
 - ※ **차량출고일을 증명하는 서류(전산자료 캡처 등)를 제출 시에만 인정**
- "**보조금 지원 확정(대상자 선정)**" 후 10일 이내(영업일 기준) 출고가 안 된 경우, 보조금 지원 확정(대상자 선정) **취소 처리**

○ 보조금 신청

- 자동차 제조·판매사는 **보조금 지원 확정(대상자 선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전기자동차를 출고시키고, **보조금 지원확정(대상자 선정)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을 통해 **보조금 지급신청**
 - ※ 보조금 지원확정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보조금 지급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차량 출고 기한 내 차량 출고를 하지 않거나, 기한 내 보조금 지급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보조금 지급이 되지 않을 수 있음. (**보조금 지급신청 이후, 시스템에 등록된 전체 서류 원본 제출**)

3) 신청서류 ※ 모든 제출 증빙서류는 신청일 기준 10일 이내 발급분 제출

○ 보조금 지원신청 제출서류(차량 출고 이전)

공통	전기자동차 구매지원신청서 및 유의사항 동의서 [붙임] 차량구매계약서 (<u>계약번호, 출고예정일 기재 및 원본대조필</u>) 청렴 이행 서약서[붙임2] /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개인	주민등록초본(주민등록번호 13자리 포함) - 공동명의자 제출 (주민등록등본, 초본,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 포함)	
개인사업자	주민등록초본, 사업자등록증	
법인, 기업	사업자등록증, 등기부등본	
우선순위 대상자 (해당자에 한해 추가제출)	취약계층 (장애인, 차상위 이하 계층)	장애인 증명서 또는 장애인 등록증,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
	상이·독립 유공자	국가유공자 등록증 또는 확인증명서
	다자녀가구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주민번호 표시) - 만 18세 이하 자녀 2명 이상
	택시	택시사업자면허증(여객자동차운송사업면허증)
	노후 경유차 폐차 후 전기차 대체 구매	(보조금 지원신청 시) 조기폐차 대상 차량 확인서 (보조금 지급신청 시) 차량 말소 사실 증명서,
	생애 최초 차량구매	주민등록초본(전체 주소 이력 포함) 자동차세, 차량관련 미과세증명서 - 만 18세 이후 현재까지 전국 단위 발급
	소상공인	소상공인 확인서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http://sminfo.mss.go.kr)발급
그 외 추가 서류 제출대상	농업인	농업인 확인서 또는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또는 증명서)
	택배 물량	화물자동차 운송 사업 허가증
	외국인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 외국인 등록사실 증명서
	지역거점 사업 구매자	지역거점사업 참여확인서[붙임4] 및 사업계획서, 차량제조사 확인서
	전환지원금 신청자	(지급 신청 시 제출 가능) 자동차 등록원부(갑부), 차량 말소 사실 증명서 등 가족관계증명서(차량 증여 또는 판매 시에만 제출)

○ 보조금 지급신청 제출서류(차량 출고 이후)

공통	① 구매보조금 지급신청서 1부. [붙임3] ② 자동차등록증 사본 1부. ③ 세금계산서 사본 1부. ④ 사업자등록증(제작사) 1부. ⑤ 통장 사본(제작사) 1부. ⑥ 위임장[붙임6],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인감증명서 ※공동명의 시
노후경유차 전기차 대체 구매	공통 + 노후경유차 차량말소사실증명서

※ 구매보조금 지급신청 시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 전산에 등록된 전체 원본 서류(보조금 지원신청 서류 포함)를 정읍시 자원순환과로 제출
(구매계약서, 자동차등록증, 세금계산서 등 사본서류 원본대조필)

- 제출처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충정로 237, 거안빌딩 2층 자원순환과 기후변화팀 전기차 담당자

V 유의사항 및 의무운행기간

○ 보조금 집행이전

- ① 취약계층(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이 자동차 구입 시 차량가액에 따라 기초연금 및 장애인연금 수급대상 등에서 탈락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충분한 검토 및 관계 기관에 문의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함.
- ② 신청 접수 이후 타 차종이나 연식 변경 불가하며, 계약을 파기할 시 보조금 지원 신청자에서 취소되며, 보급 물량(일반 ↔ 우선 등)간 변경 불가함.
- ③ 보조금 지원대상 자격부여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차량이 출고(차량대금 납부 및 세금계산서 발급·제출되지 않을 경우 자격부여 취소되거나 대기자로 변경될 수 있음.
- ④ 자격부여 이후 명의변경(공동명의포함)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자격부여 이전에 명의를 확실히하여 신청할 것. 자격부여 이후 명의를 변경할 경우 신청이 취소됨
- ⑤ 공동명의로 차량을 구매 및 등록 시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에 한하여 등록 가능
- ⑥ 1대의 차량을 공동명의로 구매하는 경우 구매자 중 대표자 1인에게 보조금 지원하는 것으로 간주 * 대표자 1인에게만 재지원 제한기간 적용
- ⑦ 보조금 지원확정 통보 이후 차량을 출고해야함. 보조금 지원 확정 통보 이전에 차량을 출고할 경우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음.

○ 보조금 집행시

- ① 구매자는 차량구매대금과 보조금의 차액을 전기자동차 제조·판매사에 납부하고, 전기자동차 제조·판매사는 정읍시로부터 보조금 수령
- ② 전기자동차 등록 후 10일 이내에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ev.or.kr)을 통하여 보조금 지급 신청
- ③ **보조금 지급 전 판외 전출 시, 보조금 지급 불가**

○ 보조금 집행이후

- ① 부득이한 사유를 제외하고 전출, 이전 시 부정수급(위장전입 등)의 여지가 있을 경우 조사 후 **보조금을 환수 조치할 수 있음.**
- ② 보조금을 지급받은 전기자동차 구매자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의4 제1항에 따라 **의무운행기간(8년)을 준수해야 함.**
- ③ **전북특별자치도 내에서 의무운행기간 미준수(타시도 판매) 시**에는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3조에 의거 아래 환수율 표에 따라 **지방비(도·시비) 보조금을 환수함.**
 - 타시도 이전 시 사전 승인 필요. 보조금 환수금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승인절차 생략 가능
 - 의무운행기간 내 차량 판매 시에는 전북특별자치도내 주소를 둔 개인 또는 법인 등에 매매 가능
 - 의무운행기간 내 차량 판매 시 의무운행기간 및 보조금 반환 의무 등의 모든 사항은 구매자(매수자)에게 인계
 - 전북특별자치도 의무운행기간 내에 부득이한 사유로 타 시·도로 이사(전출)시에는 보조금 미환수
- ④ 관할 지방자치단체 또는 한국환경공단은 보조금을 지원받아 전기화물차를 구매한 자가 해당 차량을 2만km 이상 운행하지 아니하고 최초 등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판매하는 경우, 보조금 수령자로부터 지급된 보조금의 일부(국비+지방비)*를 회수함.
* 환수액 = 국비(30%) + 지방비(운행기간별 환수율 적용)
 - 다만, 파산, 강제집행 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정상참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수하지 아니할 수 있음.
- ⑤ 의무운행기간 내 수출·폐차 등 등록말소 시 정읍시의 사전 승인 필요
 - 다만, 보조금 환수금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승인절차 생략 가능
 - 의무운행기간을 충족하지 못하고 차량등록 말소할 경우 원칙적으로 보조금(국비+지방비)을 전액 또는 운행기간별 환수율에 따라 환수

- 교통사고,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인 경우 예외 가능
- 다만, 폐차 시 보험사 등으로부터 보상받은 금액이(차량 보상금에 한함) 구매 당시 자부담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차액을 환수하며, 운행기간에 따라 아래 표의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 표1. 운행 기간별 보조금 환수율(%) >

전기차 사용기간	3개월 미만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6개월 이상 9개월 미만	9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12개월 이상 15개월 미만	15개월 이상 18개월 미만	18개월 이상 21개월 미만	21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24개월 이상 96개월 미만
회수 요율	70%	65%	60%	55%	50%	40%	30%	20%	0%

< 표2. 운행 기간별 보조금 환수율(%(수출말소) >

전기차 사용기간	6개월 미만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12개월 이상 18개월 미만	18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24개월 이상 30개월 미만	30개월 이상 36개월 미만	36개월 이상 48개월 미만	48개월 이상 96개월 미만
회수 요율	70%	65%	60%	55%	50%	40%	30%	20%

※ 2022. 6. 30. 이후 경비지원을 신청하여 지원받은 전기자동차로서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시행일(‘24.5.13.) 당시 말소되지 않은 전기자동차에 대해서도 의무운행기간(8년) 소급 적용

VI

기타 사항

- 본 공고 이외 명시되지 아니하거나 불분명한 경우에는 「2026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기후에너지환경부)」 및 정읍시 결정에 따름.
- 기타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지원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정읍시 자원순환과 (☎063-539-8163)로 문의 바랍니다.

기관	주요 역할	연락처
환경부 통합콜센터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관련 민원 상담	1661-0970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 전기자동차 충전소 찾기 - 전기자동차 지원 대상 차량 확인 -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시스템	ev.or.kr
한국자동차 환경협회	- 완속 충전기 설치, 충전기 고장 신고 - 회원카드 발급	1661-9408
정읍시 자원순환과	전기차 구매보조금 집행 관련 업무 - 보조금 지원 자격, 보조금 집행 절차 -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대상자 선정	063-539-8163

[붙임 1] 전기자동차 구매지원신청서 및 유의사항 동의서(서식)

[붙임 2] 청렴 이행 서약서(서식)

[붙임 3]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지급신청서(서식)

[붙임 4] 초소형 전기자동차 지역 거점사업 참여 확인(신청)

[붙임 5] 사업포기서(서식)

[붙임 6] 위임장(서식)

[붙임 7] 전기자동차 말소 승인 요청서(서식)

[붙임 8] 전기자동차 판매 승인 요청서

[붙임 1]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신청서

성명 (기관명)		대표자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구입차종		구매대수		보조금 신청액	
주소 (등록주소지)					
신청구분 (*해당사항 ☒)	☐ 일반 ☐ 법인 ☐ 택시(승용) ☐ 택배(화물) ☐ 전환지원금 ☐ 우선순위(장애인, 차상위 이하 계층, 소상공인 , 상아독립유공자, 다자녀가구 , 노후경유차 대체구매자, 생애최초 기존 경유화물차 소유 (☐ 여 / ☐ 부), 경유화물차 보유자 중 해당차량 폐차이행 (☐ 여 / ☐ 부)				
연락처	(전화)	(휴대폰)	(이메일)		

전기자동차 보급사업과 관련하여 위와 같이 전기차를 구입하고자 구매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자 : (인, 서명)

정읍시장 귀하

※ 지원신청서류 : 유의사항동의서, 청렴이행서약서, 매매계약서(원본대조필, 출고예정일),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주민등록초본, 사업자등록증(해당시), 우선순위 증빙서류(해당시)

※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관리카드는 동신청서로 같음함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및 제3자 위탁 · 제공 동의서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22조에 따라
귀하의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의 사항에 대해 충분히 읽어보신 후, 동의 여부를 체크,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귀하께서는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제공사항은 구입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 거부 하실 경우 보조금 지급이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 보조금 지원대상자로 선정이 되지 않는 경우에도 제출하신 개인정보는 반환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필수]

[수집 · 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개인식별정보(성명, 연락처, 주소, 신상사항 등)

[개인정보의 수집 · 이용 목적]

· 전기차 구매보조금 지급 절차에 이용

[개인정보 이용 및 보유기간]

·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급 완료 시까지 활용, 사업 종료 후 5년간 보유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 개인정보의 제3자 위탁·제공 동의[필수]

[위탁·제공되는 개인정보 항목]

· 개인식별정보(성명, 연락처, 주소, 신상사항 등)

[개인정보를 위탁 받는 자]

- 전기자동차 제작·수입사(현대, 기아, 르노삼성, 한국GM, BMW, 파워프라자 등)

[개인정보를 제공 받는 자]

· 환경부, 한국환경공단, 전기자동차 보급 지자체

[개인정보를 위탁·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 (전기자동차 제작사) 전기자동차 구매 계약 절차에 이용

· (환경부, 지자체, 한국환경공단) 전기자동차 보급실적 등 관련자료 작성에 이용

개인정보를 위탁·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및 보유기간

· 사업 종료 후 5년간 보유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본인은 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내용을 읽고 명확히 이해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본인 신청자 성명 : (인 또는 서명)

전기차 보조금 지급 취소 또는 환수에 관한 사항

- 국고보조금 신청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지급을 취소하고, 해당 금액과 보조금에 따라 발생한 이자를 환수합니다.
 -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
 - 매매취소 등 사유로 인해 보조금 대상 전기차 계약이 무효 또는 취소되어 해당 자동차의 등록을 말소(반품)한 경우
 - 해당 차종을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는 차종으로 교환한 경우
- 보조금 반환 및 이자는 15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서면으로 반환을 통보하며, 미이행 시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국세징수의 예로 강제 징수됩니다.

본인은 위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보조금 지급 취소 또는 환수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는데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명 : (인 또는 서명)

정읍시장 귀하

전기차 보조금 지급 신청 유의사항 동의서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의4제1항에 따른 의무운행기간(최초등록일을 기준으로 계산)을 준수해야 함. 다만, 의무운행기간(8년) 내 차량 판매 시 의무운행기간은 구매자에게 인계.
- ※ 전북특별자치도 내에서 의무운행기간 미준수(타시도 판매) 시에는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3조에 따라 운행기간별 보조금 환수율에 따라 지방비(도·시비) 보조금을 반납하여야 함(타시도이전시 사전승인필요)
- ※ 보조금을 지원받아 전기화물차를 구매한 자가 해당 차량을 2만km 이상 운행하지 아니하고 최초 등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판매하는 경우, 지급된 보조금(국비+지방비)의 일부를 회수함.

*환수액 = 국비(30%) + 지방비(운행기간별 환수율 적용)

- 의무운행기간 내 폐차 시에는 정읍시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8년 이내 수출 목적의 말소 등록시, 그 밖의 경우 2년 이내 폐차 시 「대기환경보전법」 및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등 관련규정에 따라 운행기간별 보조금 환수율에 따라 보조금을 반납해야 함.
- 경유화물차를 보유한 전기화물차 구매자가 경유화물차 폐차 미이행시 50만원 차감 지원됨.
- 「지방세법」 제124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개발원의 차량기준가액 산정으로 일부 차종에서는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등 수급이 중단될 수 있으니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확인해야 함.
- 전기차 구매보조금은 정읍시가 해당 차량 제조·수입사로 지급합니다.
- 공고문 및 신청서식 등에 명시되지 않거나 불분명한 사항에 대한 해석 및 결정은 정읍시 자원순환과의 의견을 따릅니다.

본인은 상기 유의사항을 이해·동의하였으며, 전기차 보조금 대상자 선정 및 보조금 지원시 상기 사항의 이행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명 : (인 또는 서명)

정읍시장 귀하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청렴 이행 서약서

위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정읍시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에 있어 교부조건 및 사업계획과 관계 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겠으며, 귀 정읍시에서 요구하는 청렴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아울러,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 과정에서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귀 정읍시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교부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지방재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벌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벌칙 규정(지방재정법 제97조) >

-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벌칙(제97조)
 -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와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
 -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법령에 따른 자치단체장의 처분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위반하여 다른 용도에 사용한 보조사업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자치단체장의 승인 없이 사업계획 또는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거나, 임의로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 또는 중단·폐지, 자치단체장의 보조사업 수행 정지명령을 위반, 보조사업 실적 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 제출 등의 행위를 한 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각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2026년 월 일

신청자 성 명 (서명)

제작·판매사 성 명 (서명)

2026년도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지급신청서

사 업 명		2026년 정읍시 전기자동차 민간보급 사업		
신 청 인 (제조·수입사)	제조·수입사명 (대리점)		대 표 자	
	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주 소			
구매자 차량개요	소유자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 소 (등록주소지)			
	차량번호		차대번호	
	차 종			
보조금 요청 금액(만원)				
입 금 희망은행 (전기차 제조·수입사)	은 행 명			
	예 금 주			
	계좌번호			
2026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과 관련하여, 정읍시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급 대상자에게 전기자동차를 판매하였으며, 구비서류를 함께 제출하오니 해당 출고차량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전기차 제조·수입사) (인)				
정읍시장 귀하				
※ 지급신청서류 1. 전기차 차량등록증(사본) 1부. 2. 전자세금계산서 1부. 3. 제작사(판매사) 사업자등록증 1부. 4. 입금계좌 통장사본 1부. 5. 말소등록증(우선순위대상자 중 노후경유차를 전기차로 대체 구매 시) 1부.(해당시) 6.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공동명의시)				
※ 시스템에 등록한 서류 전부를 원본으로 제출 제출처 : 정읍시 충정으로 237, 거안빌딩 2층 자원순환과 기후변화팀 전기자동차 담당자				

[붙임 4]

초소형
전기자동차

☐ 승용
☐ 화물

지역거점사업 참여
확인(신청)서

1. 기 관 명 :
2. 성명(대표자) : (생년월일 :)
3. 주 소 :
4. 사업장 소재지 :
5. 지역거점사업 소재지 :
6. 사업내용
 - 개요
 - 용도
 - 운영대수
- 별첨. 사업계획서

정읍시의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 참여를 확인(신청)합니다.

년 월 일

붙임 사업계획서, 차량제조사 확인서

000 대표이사

(직인)

사업포기서

- ◎ 사업명 : 2026년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
- ◎ 사업내역

대상자 선정번호		성 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 소					
신청내용	전 기 자 동 차				
	차종(모델)		수 량	보조금요청액 (천원)	
포기 사유					

사업포기서 제출 이후 어떠한 사정에도 『2026년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 대상자 선정취소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 . . .

보조사업자(사업포기자)

(서명 또는 인)

정읍시장 귀하

[붙임 6] 공동명의시에만 제출(제조·수입사 해당사항 없음)

위임장

수임자 (공동명의대표자)	성명	(인)인감도장/서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위임자 (공동명의자)	성명	(인)인감도장/서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상기 위임자_____는(은) 수입자_____에게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지원대상자 선정을 위한
일체의 사항(보조금 지급)을 위임합니다.

20 년 월 일

위임자 : (인 또는 서명)
인감도장

위임자 인감증명서 첨부 시 인감도장
위임자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첨부 시 서명

차량 소유주	성 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 소		연락처	
차량 정보	차 량 명		최초등록일	
	차량번호		차대번호	
	말소사유		말소(예정)일	

- 보조금을 지급 받은 자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의4 제1항에 따라 의무운행기간 (8년)을 준수해야 하며, 의무운행기간 내 폐차 시에는 정읍시의 사전 승인이 필요함.
※ 단, 의무운행기간 내 말소하더라도 보조금 환수금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승인 절차 생략 가능
- 의무운행기간 내 수출·폐차로 인한 차량 등록말소 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의4 제2항에 따른 운행기간별 보조금 환수율 <표1>에 따라 보조금을 반납하여야 함.
- 다만, 교통사고 등 불가피한 사유로 폐차하는 경우, 교부받은 보조금은 환수대상에서 예외로 할 수 있으나, 폐차 시 보험사 등으로부터 보상받은 금액(차량 보상금에 한함)이 구매 당시 자부담금을 초과하는 경우, <표2>에 따라 그 차액을 환수조치함.

전기차 운행기간	6개월 미만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12개월 이상 18개월 미만	18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24개월 이상 30개월 미만	30개월 이상 36개월 미만	36개월 이상 48개월 미만	48개월 이상 96개월 미만
환수율	70%	65%	60%	55%	50%	40%	30%	20%

전기차 운행기간	3개월 미만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6개월 이상 9개월 미만	9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12개월 이상 15개월 미만	15개월 이상 18개월 미만	18개월 이상 21개월 미만	21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24개월 이상 96개월 미만
환수율	70%	65%	60%	55%	50%	40%	30%	20%	0%

정읍시 전기자동차 보급사업과 관련하여 구매보조금을 지급받아 구입한 차량의 말소와 관련하여 위 유의사항을 확인하였으며, 말소를 진행하고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월 일

구매자

(서명 또는 인)

정읍시장 귀하

※ 제출서류 : 사고로 인한 폐차 시 관련 증빙서류

